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번호 | 134 |
|------|-----|

2015. 6. 29.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5.6.2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중심지 지원기준을 법제화하도록 정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시의 의무사항으로 정함(안 제3조).
- 금융산업 및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8조, 제15조).
- 금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9조~제11조).
-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공동 또는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금융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 일대를 포함한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금융시장의 대·내외 환경 변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세계 금융시장은 글로벌 IB(Investment Bank)의 조세회피처 역할을 했던 두바이나 더블린과 같은 역외금융중심지가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실물경제기반을 갖추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이 글로벌 경제회복을 주도하면서 해당 지역 금융시장이 더 많이 주목받고 있음.
- 아시아 국가의 금융경쟁력 강화와 함께 서울시(이하 “시”)는 영국의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Z/Yen(지엔)그룹이 매년 2회 발표하는 세계 금융도시의 경쟁력 평가지표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2010년 9월 24위를 기록했으나 2014년 9월 발표에는 8위로 급상승하였음¹⁾.

〈표 1〉 역대 GFCI 서울시 순위

| 구분 | 8회 (‘10.9월) | 9회 (‘11.3월) | 10회 (‘11.9월) | 11회 (‘12.3월) | 12회 (‘12.9월) | 13회 (‘13.3월) | 14회 (‘13.9월) | 15회 (‘14.3월) | 16회 (‘14.9월) |
|-------------|----------------|----------------|-----------------|-----------------|-----------------|-----------------|-----------------|-----------------|-----------------|
| 순위 (상승폭) | 24위 | 16위 (▲8) | 11위 (▲5) | 9위 (▲2) | 6위 (▲3) | 9위 (▽3) | 10위 (▽1) | 7위 (▲3) | 8위 (▽1) |

※ 평가대상 도시 : 83개(‘12년 77개 → ‘14년 83개)

1) GFCI는 영국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Z/Yen 그룹이 연2회(3월, 9월)이 평가하는 국제금융평가지수로 전 세계 금융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인적자원, 비즈니스 환경, 시장접근성, 인프라, 일반경쟁력의 5개 분야에 대한 주요 기관의 평가를 종합해 평가함. Top 10(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도쿄, 취리히, 서울, 보스턴, 워싱턴DC)

- 시와 함께 국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 83개 평가 대상 도시 가운데 28위로 평가받았음.
- 금융규제의 안정성과 정치 환경의 건전성 등 금융시스템이 견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경쟁력 상위 도시들로 지속적인 글로벌 금융허브 역할을 유지하고 있음.
- 이들 금융 경쟁력 상위 도시들은 금융규제의 선진화, 금융자유화, 법인세를 비롯한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도입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참고자료 1).
- 정부는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간 인수합병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투자회사 출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여의도와 부산광역시 문현 등 2곳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부의 금융시장 육성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수익성 악화와 금융규제 등으로 외국계 금융사의 사업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²⁾.

2) 2012년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한국법인 철수, HSBC그룹의 한국 소매금융 사업 철수, 한국씨티그룹캐피탈 매각결정 등 최근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의 사업 축소가 이어지고 있음.

다.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 정부는 금융기관의 집적 도모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고시하였음³⁾.
- 이에 따라 시는 여의도 일대를 국제 금융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해외 IR활동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외국계 금융사의 여의도 유치를 위해 AIG와의 계약을 통해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이곳에는 현재 33개 금융사를 비롯해 3개의 오피스 빌딩에 모두 79개사가 입주하였음(참고자료 2).
- 하지만, 여전히 SIFC내 외국계 금융기관의 입주율이 임대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약15%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국제금융 집적지로서의 위상이 유명무실한 상황임⁴⁾.
- 서울에는 현재 모두 155개의 외국계 금융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159개)의 97.5%에 해당하는 규모임.

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1호

4) 3개 오피스 빌딩의 전체 면적규모는 328,486㎡이며 이 가운데 외국계 금융기관의 임대면적은 전체의 14.16%인 26,716㎡에 불과함.

- 특히, 서울시에 소재한 외국계 금융기관 155개소 가운데 여의도에는 21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외국계 금융기관의 13.5% 수준임(참고자료 3).
-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집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당초 구상과 같이 여의도 일대를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심권과 강남권에 산재해 있는 대다수 국내·외 금융기관의 여의도 이전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

라.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안 제4조~제8조, 제12조 및 안 별표)

-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에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 자금 등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시장에게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각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안 제5조는 서울에 신규 진입하는 금융기관에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기관당 10억원 한도)을, 안 제6조는 내국

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신규고용자금(기관당 2억원 한도)을, 안 제7조는 내국인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자금(기관당 6천만원 한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가 국내·외 금융기관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법인세를 비롯한 다른 세제상의 혜택이나 금융산업 관련 규제의 폐지 등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판단됨.
- 부산시의 경우에는 입지보조금(50억원 한도), 고용보조금(2억원 한도), 교육훈련보조금(2억원),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10억원 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금융기관 서비스 기관 이전 지원, 지방세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이전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한 통행료 면제와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⁵⁾.
- 다만, 안 제12조의 규정과 같이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이나 방문조사 권한의 설정 등 사후 관리 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인 금융기업의 이전이나 고용과 관련해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나 보조금 지급과 사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5)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국내·외 금융기업이 시가 지급하는 제한된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이전하거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조금 지급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임.
- 관련법령에서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유치와 집적 이익을 위한 자금지원을 국가가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사정을 고려해 실제 보조금 지급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참고자료 4).

마.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제11조)

- 안 제9조는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근거를,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을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정부의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근거가 되는 시의 금융산업 육성 추진계획과 각종 시책의 심의는 물론이고,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자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 심의,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건의와 제도개선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특히, 안 제11조의 규정과 같이 위원회내에 보조금 지급 실

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임.

-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망경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운영에 따른 행정력의 분산이나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같은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바. 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환경 조성 등(안 제13조~제15조)

-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금융산업 육성과 외국 금융기관 유치에 관한 각종 사업의 시행근거와 관계기관 협력, 서울국제금융지구에서 신규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금융산업 육성이나 금융기관 유치를 통한 서울국제금융지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나 금융기관의 집적은 제한된 보조금의 지급이나 거주 환경개선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해 정부 혹은 금융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강화와 법·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사회적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 경제진흥본부장 답변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업·비영리법인 등을 말함.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며 신탁을 우선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신탁을 사회적금융이라 할 수 있는가?
 - 경제진흥본부장 답변 : 바람직한 방향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정리가 될 것이나 현재는 관련법의 미비로 서울시의 조례를 기반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거래소의 유치는 어떤 의미인가?
 - 경제진흥본부장 답변 : 거래소의 설치·운영은 독점적인 사항이 아니라 복수로 운영이 가능하고, 거래소가 유치된다면 직접적 고용이 수백 명이며, 간접적 고용효과를 고려하면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 생각함.
- 국내에 기설립된 회사가 서류상으로 신규 설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과 보조금의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업종별·기관별로 안분하도록 하는 내용과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에 의회의 추천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가?
 - 경제진흥본부장 답변 : 보조금 지원을 악용하려는 회사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지원 역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

으며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의회의 추천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V.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업종별 및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분토록 하고, 보조금에 대한 환수사유 및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함.
-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신규 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금융기관의 업종별 및 지역별로 보조금의 한도를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함(안 제8조 제1항).
- 보조금 지원 이후에 환수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신규 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함(안 제13조)

Ⅵ.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134 |
|----------|--------|

제안년월일 : 2015년 6월 29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업종별 및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분토록 하고, 보조금에 대한 환수사유 및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함.
-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신규 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금융기관의 업종별 및 지역별로 보조금의 한도를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함(안 제8조 제1항).
- 보조금 지원 이후에 환수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신규 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

하여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함(안 제13조)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 중 “외국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을 “외국 금융기관”으로 하고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8. “거래소”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안 제4조제1항의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등”을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으로서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로, “보조금 지원 대상인 금융기관 등”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의 “지원대상”을 “지원”으로, “금융기관 등으로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제4조제2항제1호의 “금융기관 등이”을 “금융기관이”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의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안 제5조제1항의 “서울에 신규 진입하는”을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안 제6조 “금융기관 등이”을 “금융기관이”로 한다.

안 제8조의 조명을 “(지원액의 한도)”에서 “(보조금의 운영 및 지원한도)”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제5조로부터 제7조까지의 보조금을 서울 금융중심지내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매년도마다 금융기관의 업종별 및 지역별로 보조금 한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운영한다.

안 제8조의 본문을 제2항으로 하며, “금융기관 등에”를 “금융기관에”로, “항목별 자금의”를 “보조금의 항목별”로 한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안 제9조,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투자

및 고용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 및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불이행이 해당금융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기타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③ 시장은 금융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특례) 시장은 서울에서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신규 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도는 별표와 같다.

안 제10조(수정안 제12조) 제3호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안 제11조(수정안 제13조) 중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를 “서울특별시의 퇴 의원 1명을 포함하여”로 한다.

안 제12조(수정안 제14조) 제1항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안 제13조(수정안 제15조) 제2호 중 “서울국제금융지구”를 “서울 금융중심지”로 한다.

안 제15조(수정안 제17조) 중 “서울국제금융지구”를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 중심지”로 하며, “외국 금융기관 등이 서울국제금융지구”를 “외국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 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8조와 관련)

| 항 목 | 지 원 기 준 | 지 원 한 도 |
|----------------|--|--------------------------------------|
|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 ○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
| 신규고용자금 | ○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 기관당 2억원 이내 |
| 교육훈련자금 | ○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수정안 대비표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4. (생략)</p> <p>5. “보조금”이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나 <u>외국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u>에 교부하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을 말한다.</p> <p>6.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이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구입·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 <p>제2조(정의) _____</p> <p>_____.</p> <p>1.~4. (제정안과 같음)</p> <p>5. _____</p> <p>_____</p> <p>_____ <u>외국 금융기관</u> _____</p> <p>_____.</p> <p>6. (제정안과 같음)</p> <p>7. “<u>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u>”이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p> <p>8. “<u>거래소</u>”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
| <p>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u>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등</u>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u>보조금 지원 대상인 금융기관 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u></p> | <p>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u>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으로서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u>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u>금융기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u></p> |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p>② 제1항에 따른 <u>지원대상</u>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금융기관 등으로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1. <u>금융기관 등이</u> 창업하는 경우 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 <p>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u>지원</u>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u></p> <p>1. <u>금융기관이</u> 창업하는 경우 2. (제정안과 같음)</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u>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u> 2. 「<u>자본시장법</u>」의 <u>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의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u></p> |
| <p>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u>서울에 신규 진입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 <p>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 <u>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p> <p>② (제정안과 같음)</p> |
| <p>제6조(신규고용자금의 지원) 시장은 <u>금융기관 등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규 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 <p>제6조(신규고용자금의 지원) ----- <u>금융기관이</u> ----- ----- -----.</p> |
| <p>제8조(<u>지원액의 한도</u>)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u>금융기관 등에</u> 지원하는 <u>항목별 자금의 한도</u>는 별표와 같다.</p> | <p>제8조(<u>보조금의 운영 및 지원한도</u>) ① 시장은 <u>제5조로부터 제7조까지의 보조금을 서울 금융중심지내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매년도마다 금융기관의 업종별 및 지역별로 보조금 한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운영한다.</u></p> <p>②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u>금융기관에</u> 지원하는 <u>보조금의 항목별 한도</u>는 별표와 같다.</p> |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p>〈신설〉</p> | <p>제9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투자 및 고용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 및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불이행이 해당금융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기타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p>③ 시장은 금융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p> |
| <p>〈신설〉</p> | <p>제10조(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특례) 시장은 서울에서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신규 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도는 별표와 같다.</p> |
| <p>제9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 (생략)</p> | <p>제11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 (제정안과 같음)</p> |
| <p>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 <p>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p>1.~2. (생략) 3. 신규진입 <u>금융기관</u>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 4.~5. (생략)</p> | <p>1.~2. (제정안과 같음) 3. ----- <u>금융기관</u> ----- 4.~5. (제정안과 같음).</p> |
| <p><u>제11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u>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u>를 둘 수 있다. ②~④ (생략)</p> | <p><u>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u>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u>를 둘 수 있다. ②~④ (제정안과 같음)</p> |
| <p><u>제12조(사후관리)</u>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 등 관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u>금융기관</u> 등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이 해당 <u>금융기관</u>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p> | <p><u>제14조(사후관리)</u>① ----- ----- -----<u>금융기관</u> ----- ----- <u>금융기관</u> ----- ----- ② (제정안과 같음)</p> |
| <p><u>제13조(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u> ① 시장은 서울 금융산업 발전 및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략) 2. <u>서울국제금융지구</u> 내 외국 금융기관 유치 홍보 3. (생략) ② (생략)</p> | <p><u>제15조(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u> ① ----- ----- ----- ----- 1. (제정안과 같음) 2. <u>서울 금융중심지</u> ----- 3.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p> |
| <p><u>제15조(행정지원 등)</u> 시장은 <u>서울국제금융지구</u>에서 신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 등이 <u>서울국제금융지구</u>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 <p><u>제17조(행정지원 등)</u> ----- <u>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u>-----, 외국 금융기관이 <u>서울 금융중심지</u>----- -----.</p> |
| <p>[별 표] <u>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8조와 관련)</u></p> | <p>[별 표] <u>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8조와 관련)</u></p> |

| 제 정 안 | | | 수 정 안 | | |
|--|--|--------------------------------|---|---|--|
| 항 목 | 지원기준 | 지원한도 | 항 목 | 지원기준 | 지원한도 |
|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분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 기관당 10억 원 이내 (지역분부는 25/100) |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u>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분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u> | 기관당 10억 원 이내 (<u>거래소 및 지역분부는 25억 원 이내</u>) |
| 신규고용자 금 |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 기관당 2억 원 이내 | 신규고용자 금 | (제정안과 같음) | (제정안과 같음) |
| 교육훈련자 금 |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 기관당 6천 만원 이내 | 교육훈련자 금 | (제정안과 같음) | (제정안과 같음) |
| ※ 신규 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으로 산정함 | | | ※ <u>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u> | |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금융중심지”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정한 금융중심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을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외국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본부”란 외국 금융기관으로서 3개국 이상의 지역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2개국 이상의 지역의 금융업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보조금”이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나 외국 금융기관에 교부하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 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을 말한다.
6.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이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구입·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를 말한다.
7.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

간단체를 말한다.

8. “거래소”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으로서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의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 금융기관 신규 유치에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제1항의 보조금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규고용자금의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 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규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금융기관이 내국인을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한한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전문대학원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전문대학원

제8조(지원액의 한도) ① 시장은 제5조로부터 제7조까지의 보조금을 서울 금융중심지내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매년도마다 금융기관의 업종별 및 지역별로 보조금 한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항목별 보조금의 항목별 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투자 및 고용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 및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불이행이 해당금융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기타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③ 시장은 금융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 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특례) 시장은 서울에서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신규 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11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 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희망경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금융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3. 신규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
4.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 등 관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 ① 시장은 서울 금융산업 발전 및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중심지의 구성에 관한 국제 동향의 파악
2. 서울 금융중심지 내 외국 금융기관 유치 홍보
3. 기타 외국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 또는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신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8조와 관련)

| 항 목 | 지 원 기 준 | 지원한도 |
|-------------------------|--|--|
| 사 업 용 설 비 설 치 자 금 | ○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 는 25억원 이내) |
| 신규고용 자 금 | ○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 기관당 2억원 이내 |
| 교 육 훈 련 자 금 | ○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